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 1. 평소 원활한 외부감사제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과 재무정보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유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3.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음 에도 감사보고서 및 관련 정보를 성실히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사인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상장기업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감사보고서 수령 사실과 감사의견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동 규정에도 불구 하고 감사보고서 수령후 이를 지연공시
- 4. 이에 **상장기업** 감사인이 외부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유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①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한국거래소에 통보

-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는 즉시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 제출 사실과 감사의견을 유선(핸드폰) 또는 e-mail로 통보^{**}
 - * 외감법상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정기 총회 1주일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
 - ** <별첨1> 한국거래소 담당자 및 연락처 참고

②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유의

-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는 재무정보와 연계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다 엄정한 외부감사업무 수행
 - * <별첨2>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 참조

③ 감사의견 등에 대한 비밀엄수 및 내부통제 강화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공시하기 전에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엄수 및 철저한 내부통제 실시

4 기타 사항

-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시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주석 등에 구분 표시하도록 피감사대상회사에 안내
 - * 코스닥의 경우 채권(매출채권 이외)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0%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해당

<별첨1>

한국거래소 담당자 및 연락처

시장	담	당팀	성명	전화	핸드폰	eMail
 유가	1팀	팀장	단일순	3774-8750	010-3734-9102	isdhan@krx.co.kr
#/1 증권	2팀	팀장	손성진	3774-8760	010-6518-3199	sjson@krx.co.kr
등 전	3팀	팀장	황호진	3774-8770	010-9008-1445	piano@krx.co.kr
코스닥	1팀	팀장	정지헌	3774-9840	-	jiheoni@krx.co.kr
	2팀	팀장	오영탁	3774-9860	010-8700-6001	abcd@krx.co.kr
	3팀	팀장	김재향	3774-9880	010-5012-8489	jaehkim@krx.co.kr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요약)

※ 세부내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참조

요 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매출액	【관리】 최근년 5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퇴출】	【관리】 최근년 30억원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후 3년 미적용 【퇴출】
	2년연속	2년연속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관리】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 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 (연결 기준, 지배+비지배합친 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후 3년 미적용 【퇴출】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장기간 영업손실	-	【관리】 4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08년 사업년도부터) (별도 기준, 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 신성장동력기업(신성장기업부) 미적용 【퇴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시(신성장동력기업 제외)
자본잠식/ 자기자본	【관리】 최근년말 자본잠식률 50%이상	【관리】 (A)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검토(감사) 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연결 기준, 자기자본 비지배지분 제외)
	【퇴출】 2년연속 or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퇴출】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or 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or 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or Bor C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가	【관리】 액면가20%미달 30일간 지속 * 시가총액 5,000억원이상 법인 제외 【퇴출】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누적30일간 액면가20%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시가총액	【관리】 시가총액(우선주포함) 5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퇴출】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누적30일간 50억원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퇴출】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 10일&누적 30일간 40 억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요 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사외이사등	【관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 퇴출 】 2년연속	【관리】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 퇴출 】 2년연속
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퇴출】	【관리】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퇴출】
파산신청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이관 【관리】 파산 신청 【퇴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이관 【관리】 파산 신청 【퇴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감사(검토) 의견	【관리】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 감사보고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퇴출】 ・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감사보고서 범위제한한정 2년연속	【관리】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or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내 미제출 【퇴출】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거래량	【관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월평균거래량 2만주이상, 소액주주 5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신규상장법인,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배제 【퇴출】 2반기 연속	【관리】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월간거래량 1만주이상,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적용배제 【퇴출】 2분기 연속
지분분산	 【관리】 소액주주200인미만 or 소액주주지분10%미만 * 국내외 동시공모로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가 70만주이상인 경우는 적용배제 【퇴출】 2년연속 	【관리】 소액주주200인미만 or 소액주주지분20%미만
불성실공시	【관리】 1년간 공시위반 관련 벌점합계 15점 이상 【퇴출】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이관	【관리】 2년간 공시위반 관련 벌점합계 15점 이상 【퇴출】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이관
공시서류	【관리】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퇴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2회연속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관리】 (A)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B) 정기주총 미개최 or 재무제표 미승인 【퇴출】 ●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A(미제출상태유지) or B 후 다음회차에 A or B

** 하루산도 또는 은행기대정지 ** 법률에 때론 해산시유 발생시 ** 구석왕도제한 두는 경우 ** 상감법인이 지주화사의 완전사회사가 되고 동 ** 가장원시 우화상장원리는 경우 ** 우최상장시도 관리종목 지정된 범인 - 참산정시도 관리종목 지정된 범인 - 불성시장시 누개법점이 최근 다던간 15점 이상 우가년 경우 - 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마친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하면 등 보건 등 가원 경우 - 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마친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권 경우 - 기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마친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권 경우 - 기업계에 등 가로 불성경상시범인으로 전용 경우 ** 화생권차개시 선형범인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범인 - 회생실차개시신형 기각, 희생실차개시실형 취소 회사계의 불인가 또는 희생권차제시검정시 - 기업의 제속성 등 상업병인으로서의 작업이 이외되고 않는 경우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 - 자료의 내용 등 중요한 사람의 허위기제 또는 누막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반당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업병인으로서의 작업이 인정되고 않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업병인으로서의 작업이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업병인으로서의 작업이 인정되고 않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업병인으로서의 작업이 인정되고 않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업병인으로서의 작업이 안정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업병인으로서의 작업이 안정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생명하여 공원하다고 반당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생명하여 등 생명하여 당하다고 반당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생명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등 생명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의 기상병사가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가나는 경우 - 가나는 경우 - 기업의 제상기 기업 기업 기업 기업 기업 등 등 등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계 기상 병원 등을 통합에 당하고 한편된 경우 - 가나는 경우 - 기업의 기업병원을 경우 - 가가 자료를 위해 상장폐지가의 중대한 회원인 경우 - 기업의 기상병사가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기업의 기상병사가나 보이를 위해 모는 경우 - 기업의 기상병사가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기업병사 등을 통합에 상업하고 사용을 취임하는 경우 - 기대소가 무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원호하다고 안정되는 경우 - 기업 기업 등 등을 통합이 화면된 경우 - 가가본의 기업을 가장을 위해 상장계자가 필요하다고 안정되는 경우 - 기계소가 부자자보호를 위해 상장계자가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 - 가가본의 등에 상업 건강을 위해 사장에 기관하는 경우 - 기계소가 무자자보호를 위해 상장계자가 원호하다고 안정하는 경우 - 최계차리 위반 - 사업보고 사용을 위해 상장계자가 원호하다고 안정하는 경우 - 최계차리 위반 - 사업보고 사용을 위해 상장계자가 원호하다고 안정하는 경우 - 최계차리 위반 - 사업보고 사용을 위해 상장계차리 위한 경우 기계차리 위반으로 사용을 위해 상장계차리 위한 경우 기계차리 위반으로 가장 보건을 위해가는 경우 - 최계차리 위반 - 독려살의 장면로 가장으로 위해 수장계차리 위한 경우 기계차리 위반으로 생위하고 가장을 위해 가장 기계하고 보건 경우 - 기계소리 가장으로 위해 가장 기계소리 위한 경우 - 관리생물의 경우 전환 기계차리 위반으로 가장으로 위해 가장으로 기계하고 보다는 기계소에 가장으로 위해 가장으로 가장으로 가장으로 가장으로 가장으로 가장으로 가장으로 가장으로	요 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회계처리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 이상의 증권발행 제한 또는 검찰고발통보(전현직임원에 대한 경우포함) 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회계처리위반으로	기타 (즉시퇴출) 상장폐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시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동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불성실공시로 관리중목 지정된 법인 불성시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추가된 경우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대해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법인으로 관리종목 지정된법인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결정시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인정되지않는 경우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장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형우 상강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형우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확인된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해소한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사유를해소한 경우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피흡수합병등 해산사유 발생시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 관리종목 지정 후 누계별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추가된 경우 관리종목지정해제 후 3년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재지정된 경우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법인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법인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 희생절차개시 신청법인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 희생절차개시신청 기각,희생절차개시결정 취소,회생계획불인가 또는희생절차폐지결정시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않는 경우 상장신청서 및 첨부서류내용 중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자가본의 5%이상 횡령/배임사실 확인(임원은 3%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경우 주된 영업의 정지(분기3억,반기7억)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경우 자기자본의 50%이상 손상차손 발생시 관리/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변동,제3자배정증자대급 6월내 재유출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처리 위반 사업보고서,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위반 사업보고서,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위반 사업보고서,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위반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계처리 위반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정정, 검찰의 기소내용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등을 통하여 회계처리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위반내용을 반영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회계처리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당해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 4월 이상의 증권발행 제한 또는 검찰고발통보(전현직임원에 대한 경우포함)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